

제4장 이용계약

제1조 (급여계약 목적 등)

-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 1. 계약 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정여부 등을 확인 한다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
- ④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,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계약해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

인정받지 못한 때

6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4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)

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3.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
4.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제5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)

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5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제5장 이용료

제1조 (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)

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.

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
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 한다.

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
제2조 (이용료 변경 및 절차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.

1.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2.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정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3. 이용자의 건강상태,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
4.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]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5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되는 경우 별지에 기록하며 별도의 운영규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.

1.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]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

제3조 (이용료 납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,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
-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

제1조 (서비스 내용)

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

-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1.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

[별지] 1-1. 2024년 수가

2024년 월 이용료 한도액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023	1,885,000 원	1,690,000 원	1,417,200 원	1,306,200 원	1,121,100 원	624,600 원
2024	2,069,900 원	1,869,600 원	1,455,800 원	1,341,800 원	1,151,600 원	643,700 원
증가액	184,900 원	179,600 원	38,600 원	35,600 원	30,500 원	19,100 원

2024년 장기요양 수가

등급		2025년 수가	2025년 본인부담금	2026년 수가	2026년 본인부담금
3시간이상 ~ 6시간미만	1등급	38,630 원	5,795 원	39,810 원	5,972 원
	2등급	35,760 원	5,364 원	36,850 원	5,528 원
	3등급	33,010 원	4,952 원	34,020 원	5,103 원
	4등급	31,510 원	4,727 원	32,470 원	4,871 원
	5등급	30,000 원	4,500 원	30,920 원	4,638 원
	인지지원등급	30,000 원	4,500 원	30,920 원	4,638 원
6시간이상 ~ 8시간미만	1등급	51,780 원	7,767 원	53,360 원	8,004 원
	2등급	47,960 원	7,194 원	49,420 원	7,413 원
	3등급	44,270 원	6,641 원	45,620 원	6,843 원
	4등급	42,770 원	6,416 원	44,070 원	6,611 원
	5등급	41,240 원	6,186 원	42,500 원	6,375 원
	인지지원등급	41,240 원	6,186 원	42,500 원	6,375 원
8시간이상 ~ 10시간미만	1등급	64,400 원	9,660 원	66,360 원	9,954 원
	2등급	59,660 원	8,949 원	61,480 원	9,222 원
	3등급	55,080 원	8,262 원	56,760 원	8,514 원
	4등급	53,580 원	8,037 원	55,210 원	8,282 원
	5등급	52,050 원	7,808 원	53,640 원	8,046 원
	인지지원등급	52,050 원	7,808 원	53,640 원	8,046 원
10시간이상 ~ 13시간이하	1등급	70,950 원	10,643 원	73,110 원	10,967 원
	2등급	65,720 원	9,858 원	67,720 원	10,158 원
	3등급	60,720 원	9,108 원	62,570 원	9,386 원
	4등급	59,190 원	8,879 원	61,000 원	9,150 원
	5등급	57,690 원	8,654 원	59,450 원	8,918 원
	인지지원등급	52,050 원	7,808 원	53,640 원	8,046 원
13시간초과	1등급	76,080 원	11,412 원	78,400 원	11,760 원
	2등급	70,480 원	10,572 원	72,630 원	10,895 원
	3등급	65,110 원	9,767 원	67,100 원	10,065 원
	4등급	63,600 원	9,540 원	65,540 원	9,831 원
	5등급	62,100 원	9,315 원	63,990 원	9,599 원
	인지지원등급	52,050 원	7,808 원	53,640 원	8,046 원

[별지] 1-2. 2025년 수가

2025년 월 이용료 한도액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024	2,069,900 원	1,869,600 원	1,455,800 원	1,341,800 원	1,151,600 원	643,700 원
2025	2,306,400 원	2,083,400 원	1,485,700 원	1,370,600 원	1,177,000 원	657,400 원
증가액	236,500 원	213,800 원	29,900 원	28,800 원	25,400 원	13,700 원

2025년 장기요양 수가

등급		2025년 수가	2025년 본인부담금	2026년 수가	2026년 본인부담금
3시간이상 ~ 6시간미만	1등급	39,810 원	2,389 원	40,650 원	2,439 원
	2등급	36,850 원	2,211 원	37,630 원	2,258 원
	3등급	34,020 원	2,041 원	34,740 원	2,084 원
	4등급	32,470 원	1,948 원	33,160 원	1,990 원
	5등급	30,920 원	1,855 원	31,580 원	1,895 원
	인지지원등급	30,920 원	1,855 원	31,580 원	1,895 원
6시간이상 ~ 8시간미만	1등급	53,360 원	3,202 원	54,490 원	3,269 원
	2등급	49,420 원	2,965 원	50,470 원	3,028 원
	3등급	45,620 원	2,737 원	46,590 원	2,795 원
	4등급	44,070 원	2,644 원	45,000 원	2,700 원
	5등급	42,500 원	2,550 원	43,400 원	2,604 원
	인지지원등급	42,500 원	2,550 원	43,400 원	2,604 원
8시간이상 ~ 10시간미만	1등급	66,360 원	3,982 원	67,770 원	4,066 원
	2등급	61,480 원	3,689 원	62,780 원	3,767 원
	3등급	56,760 원	3,406 원	57,960 원	3,478 원
	4등급	55,210 원	3,313 원	56,380 원	3,383 원
	5등급	53,640 원	3,218 원	54,780 원	3,287 원
	인지지원등급	53,640 원	3,218 원	54,780 원	3,287 원
10시간이상 ~ 13시간이하	1등급	73,110 원	4,387 원	74,660 원	4,480 원
	2등급	67,720 원	4,063 원	69,160 원	4,150 원
	3등급	62,570 원	3,754 원	63,900 원	3,834 원
	4등급	61,000 원	3,660 원	62,290 원	3,737 원
	5등급	59,450 원	3,567 원	60,710 원	3,643 원
	인지지원등급	53,640 원	3,218 원	54,780 원	3,287 원
13시간초과	1등급	78,400 원	4,704 원	80,060 원	4,804 원
	2등급	72,630 원	4,358 원	74,170 원	4,450 원
	3등급	67,100 원	4,026 원	68,520 원	4,111 원
	4등급	65,540 원	3,932 원	66,930 원	4,016 원
	5등급	63,990 원	3,839 원	65,350 원	3,921 원
	인지지원등급	53,640 원	3,218 원	54,780 원	3,287 원

[별지] 1-3. 2026년 수가

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025	2,306,400 원	2,083,400 원	1,485,700 원	1,370,600 원	1,177,000 원	657,400 원
2026	2,512,900 원	2,331,200 원	1,528,200 원	1,409,700 원	1,208,900 원	676,320 원
증가액	206,500 원	247,800 원	42,500 원	39,100 원	31,900 원	18,920 원

2026년 장기요양 수가

등급		2025년 수가	2025년 본인부담금	2026년 수가	2026년 본인부담금
3시간이상 ~ 6시간미만	1등급	40,650 원	2,439 원	41,820 원	2,509 원
	2등급	37,630 원	2,258 원	38,720 원	2,323 원
	3등급	34,740 원	2,084 원	35,740 원	2,144 원
	4등급	33,160 원	1,990 원	34,120 원	2,047 원
	5등급	31,580 원	1,895 원	32,490 원	1,949 원
	인지지원등급	31,580 원	1,895 원	32,490 원	1,949 원
6시간이상 ~ 8시간미만	1등급	54,490 원	3,269 원	56,060 원	3,364 원
	2등급	50,470 원	3,028 원	51,930 원	3,116 원
	3등급	46,590 원	2,795 원	47,940 원	2,876 원
	4등급	45,000 원	2,700 원	46,300 원	2,778 원
	5등급	43,400 원	2,604 원	44,650 원	2,679 원
	인지지원등급	43,400 원	2,604 원	44,650 원	2,679 원
8시간이상 ~ 10시간미만	1등급	67,770 원	4,066 원	69,730 원	4,184 원
	2등급	62,780 원	3,767 원	64,590 원	3,875 원
	3등급	57,960 원	3,478 원	59,640 원	3,578 원
	4등급	56,380 원	3,383 원	58,010 원	3,481 원
	5등급	54,780 원	3,287 원	56,360 원	3,382 원
	인지지원등급	54,780 원	3,287 원	56,360 원	3,382 원
10시간이상 ~ 13시간이하	1등급	74,660 원	4,480 원	76,820 원	4,609 원
	2등급	69,160 원	4,150 원	71,160 원	4,270 원
	3등급	63,900 원	3,834 원	65,750 원	3,945 원
	4등급	62,290 원	3,737 원	64,090 원	3,845 원
	5등급	60,710 원	3,643 원	62,460 원	3,748 원
	인지지원등급	54,780 원	3,287 원	56,360 원	3,382 원
13시간초과	1등급	80,060 원	4,804 원	82,370 원	4,942 원
	2등급	74,170 원	4,450 원	76,310 원	4,579 원
	3등급	68,520 원	4,111 원	70,500 원	4,230 원
	4등급	66,930 원	4,016 원	68,860 원	4,132 원
	5등급	65,350 원	3,921 원	67,240 원	4,034 원
	인지지원등급	54,780 원	3,287 원	56,360 원	3,382 원

[별지] 2 비급여 비용
비급여 비용

비급여 비용 항목	금액
급식비	3,800 (26년부터) 3,500 (25년까지)
간식비	1,000
의료비	실비 청구
기타 수급자 개인 물품	실비 청구